

9.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

가. 서 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해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인(취소)하고, 감소한 재산의 회복을 재판상 청구하는 권리를 이른바 채권자취소권이라고 하고(민법 제406조), 그러한 소송을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라고 한다.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아오는 소송이다.

이 권리의 행사는 채권자가 반드시 법원에 대하여 소에 의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에 관하여는 형성권과 원상회복청구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견해가 통설이고, 그에 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성질도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나. 요 건

(1) 개 설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① 채권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고,⁴⁵³⁾ ②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 채무초과 상태이어야 하고(무자력),⁴⁵⁴⁾ ④ 채무자가 사해행위로

453)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나,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690 판결)

454) 어느 특정 채권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채무자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을 것과 그 채권자에게만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며, 특정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그 담보물이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경우에 한하여만 사해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다47106, 47113, 4712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한 것이어야 하고(채무자의 악의),⁴⁵⁵⁾ ⑤ 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을 요한다.

(2)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98조 제1항, 제2항, 제197조 제1항, 제251조 제1항 참조),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⁴⁵⁶⁾

㉡ 채무자가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물상보증인이 되는 행위는 부동산의 담보가치만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에 감소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물상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액에서 다른 채권자가 가지는 피담보채권액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공제한 잔액만을 채무자의 적극재산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상태가 심화되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한다.⁴⁵⁷⁾

㉢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이 당해 채무액을 초과하여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채권자를

455)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 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45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457)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해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할 수 없지만, 당해 채무액이 그 부동산의 가액 및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우선변제받을 액을 공제한 나머지 채권액에 대하여는 채권자취소권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⁴⁵⁸⁾

㉔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⁴⁵⁹⁾

(3)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㉕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지만, 부동산의 매각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⁴⁶⁰⁾

㉖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권리행사로서 다른 채권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것이 방해받아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도 다른 채권자가 있다는 이유로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채권자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전체적으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⁴⁶¹⁾

㉗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⁴⁶²⁾ 이러한 법리는 위 담보권 설정에 갈음하여 신규로 자금을 제공하는 채권자와 사이에

458)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63656 판결

459)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633 판결

460)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46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14975 판결

462)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위 채권자 혹은 그가 지정하는 제3자를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방식의 신탁행위의 사해성 여부는 신탁계약 당시의 채권채무관계를 비롯하여 신탁의 경위 및 목적과 경제적 의미, 신탁을 통하여 제공받은 자금의 사용처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⁴⁶³⁾

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할 당시 가까운 장래에 성립할 개연성이 높았던 피보전채권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증여를 사해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⁴⁶⁴⁾

(4) 당사자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부만을 상대로 하거나 수익자와 전득자를 공동 피고로 하여 제기할 수 있고,⁴⁶⁵⁾ 채무자에 대하여서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한 취소청구는 부적법하다.⁴⁶⁶⁾

(5) 소의 제기기간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를 위한 출소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청구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⁴⁶⁷⁾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⁴⁶⁸⁾

민법 제974조, 제975조에 의하여 부양의 의무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그중 부양의무를 이행한 1인이 다른 부양의무자에 대하여 이미 지출한 과거 부양료의 지급을 구하는

463)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8988 판결

464)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29916 판결

465)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466) 대법원 1967. 12. 26. 선고 67다1839 판결

467)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795 판결

46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다11408 판결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이고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 성립하게 되지만, 그러한 부양료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의 제척기간은 부양료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서 성립한 시기가 아니라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취소원인을 안 날' 또는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진행한다.⁴⁶⁹⁾

(6) 권리보호의 이익

㉠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를 이유로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 소송계속 중에 사해행위가 해제 또는 해지되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벌써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목적은 이미 실현되어 더 이상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진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기 전에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타당하다.⁴⁷⁰⁾

㉡ 여러 명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시기를 달리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이들 소가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후에 제기된 다른 채권자의 동일한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확정된 판결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⁴⁷¹⁾

㉢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하여 수익자 앞으로 가등기를 마친 후 전득자 앞으로 가등기 이전의 부가등기를 마치고 나아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까지 마쳤다 하더라도, 위 부가등기는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에 기초한 수익자의 권리의 이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부가등기에 의하여 수익자로서의 지위가 소멸하지는 아니하며,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매매예약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⁴⁷²⁾

(7) 입증책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469)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79870 판결

470)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471)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472)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판결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⁴⁷³⁾ 따라서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⁴⁷⁴⁾

(8) 원상회복방법

㉠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아직 채권을 추심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수익자가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사해행위의 취소는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데에 그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가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가 이루어지더라도, 채권자와 수익자의 관계에서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채권을 취득하여 권리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⁴⁷⁵⁾

㉡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⁴⁷⁶⁾

㉢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취소의 효력은 민법 제407조에 따라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미치므로 수익자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도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기절차상의 흠을 이유로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사

473)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37504 판결

474)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475)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2다2743 판결

47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해행위가 취소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수익자를 상대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면 수익자는 말소등기를 해 줄 수밖에 없어서 결국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회복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와 같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게 할 필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한 판결의 소송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위 판결에 기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마친 말소등기는 등기절차상의 흠에도 불구하고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유효하다.⁴⁷⁷⁾

나. 청구취지 기재례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증여계약)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15. 4. 4. 접수 제 37504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②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그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 당시 주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본 사례

채무자가 보증인의 보증하에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구상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자가 연대보증 후 소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증여한 사안에서, 증여계약 당시 채무자가 당해 대출금을 당초 변제기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변제기를 연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대출금이 많이 있었고, 거래처의 부도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었던 점 등 증여계약 당시의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구상채권의 성립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477)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8499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증여계약 및 매매예약)

1. 피고 이순자와 소외 배일남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4. 체결한 증여계약 및 피고 배종호와 소외 배일남과의 사이에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3. 31. 체결한 매매예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이순자는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3. 10. 15. 접수 제2901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배종호는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4. 4. 11. 접수 제2285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판례] ① 연대보증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있어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이 생기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 및 사해의사 추정 여부와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매매계약)

1.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피고 김종수와 소외 전유순 사이의 2016. 1. 15.자 매매예약 및 피고 지동석과 피고 김종수 사이의 같은 해 7. 16. 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김종수는 ○○지방법원 ○○등기소 같은 해 1. 15. 접수 제184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같은 해 7. 5. 접수 제32852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지동석은 같은 등기소 같은 달 23. 접수 제36214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 기준 시기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가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사해행위의 요건의 구비 여부는 가등기의 원인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51919 판결)

[참조판례]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민법 제406조 제2항소정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러한 사실을 채권자가 알게 된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당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때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9다2515 판결)

☐ 사해행위취소 청구(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8. 10. 체결된 매매예약과 2014. 12.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4. 8. 11. 접수 제584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14. 12. 29. 접수 제9323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일부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인 부동산에 수 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사해행위 후 그 중 일부의 저당권만이 말소된 경우에도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경우 배상하여야 할 가액은 사해행위 취소시인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에 관한 입증책임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5.23. 선고 95다51908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피고와 소외 강○○ 사이의 별지 목록 1 내지 4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5. 9.자 매매예약 및 같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2. 24.자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한 ○○지방법원 ○○지원 2006. 2. 24.접수 제4522호 2005. 5. 3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같은 목록1 내지 4기재 부동산에 관한 같은 지원 2005. 5. 9.접수 제16393호 2005. 3.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무자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할 수 없는데도 그 소유의 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양도한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

채무자들이 11억5천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도내고 잠적하면서 그들 소유의 부동산들을 채무자들의 가까운 친척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채무자들에게 다른 재산이 다소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 채무액 금액을 변제하고 남을 정도가 된다는 증명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성립하고 위 전득자들이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더라도 채무가 초과된 채무자가 특정부동산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넘겨주는 것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7198 판결)

[참조판례]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에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 채권자가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자체의 반환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때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동산이고 그 현물반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취소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그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3468, 23475 판결)

☐ 사해행위취소 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1. 피고와 소외 정○○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7.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5. 1. 9. 접수 제46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새로운 법률원인으로써 이해관계를 갖게 된 자를 말한다. 따라서 소외인 (A)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피고로부터 차용하고 담보조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한 후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소외인 (B)에게 가장양도한 후 피고 앞으로 가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는 형식상만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가등기를 경료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새로운 법률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통정허위 표시에서의 제3자로 볼 수 없다.

②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의 의미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채무자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해행위라 할 수 없다.(대법원 1982.5.25. 선고 80다1403 판결)

[참조판례] 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신탁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서 한 사해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그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9.7. 선고 98다41490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매매예약 및 매매계약)

1. 피고 박종례와 소외 박정관 사이에 별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규순과 소외 박정관 사이에 같은 목록 2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박규순과 소외 최영례 사이에는 같은 목록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7. 3. 6. 에 체결한 각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이를 각 취소한다.
2. 피고 박종례는 같은 목록 1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지방법원 ○○등기소 2007. 3. 9. 접수 제58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6. 17. 접수 제 122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박규순은 같은 목록 2, 3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9. 접수 제 583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같은 등기소 2007. 6. 17. 접수 제 122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 청구권의 행사 방법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8393 판결)

[참조판례]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민법 제406조 제2항 소정의 채권자가 그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사실을 채권자가 안 때를 의미하고 단순히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해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의 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26475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증여계약일부취소, 가액배상, 대위에 의한)

1. 피고와 소외 한○현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한 2014. 1. 27.자 증여계약은 94,475,050원의 한도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한○현(○○시 ○○동 123-3 ○○아파트 101동 102호)에게 94,475,050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근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증여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증여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서울고법 1999. 1.20. 선고 98나21320 판결 ; 확정)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증여계약)

1. 피고와 소외 김○○ 사이의 인천 ○○구 ○○동 산 6-1 임야 33,109㎡에 관한 2011. 12. 30.자 증여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12. 30. 접수 제17069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채무자가 경매 진행중인 부동산을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자가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매부동산을 채권자에게 매도하면서, 만약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 그 매매를 무효로 하되 1개월 내에 변제하지 못하면 그 부동산의 처분은 채권자에게 맡기기로 하고 채권자는 근저당권자에 대한 경락대금 상당의 채권을 대신 변제하여 매매대금의 지급에 충당하되 채권자가 그 경락 및 경매 절차를 정리하지 못했을 때에는 매매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채권자가 경매 절차를 해결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대안도 제시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대금지급기일이 임박하여 부동산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나머지 최소한 경매보다는 나은 조건으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기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여, 그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5.6.9. 선고 94다32580 판결)

[참조판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 및 제척기간의 기산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익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를 제 쳐놓고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만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므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있는 날이 언제인지와 관계없이 본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사해행위 취소의 소의 제척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11.8. 선고 96다26329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매매계약)

1. 피고 김재균은 원고에게 돈 11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7.3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정종구와 피고 김재균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20.경(등기부상 2011.1.10.자)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정종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1. 3. 30. 접수 제23200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사해행위취소판결의 기판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와의 상대적인 관계에서만 미칠뿐 그 소송에 참가하지 아니한 채무자 또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8.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참조판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의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만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위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채무자의 부동산 매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소유권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한 채무 담보의 목적으로 신탁법에 의하여 신탁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신탁계약이 해지되기 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고, 그렇다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를 채무자에게 환원시키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결과가 되어 공평에 반하므로, 결국 채권자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매수인이 대위변제한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하고,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 앞으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는 중간과정을 거쳤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 50101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가액 배상)

1. 피고와 소외 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15. (등기부상 2014. 12. 2.) 체결된 매매계약은 61,970,763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970,763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참조판례] ①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이 허용되기 위하여 수익자등의 고의·과실을 요하는지 여부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원래 채권자와 아무런 채권·채무관계가 없었던 수익자가 채권자취소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견지에서 법이 특별히 인정한 것이므로, 그 가액배상의 의무는 목적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됨으로써 성립하고, 그 외에 그와 같이 불가능하게 된 데에 상대방인 수익자 등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②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에 의한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의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료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협의분할 계약취소,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액배상)

1. 피고 김○봉과 피고 김○동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체결된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김○봉은 피고 김○동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6. 7. 12. 접수 제5596호로 마친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김○동은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이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무자력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법정상속지분을 협의분할의 방식으로 포기함으로써 다른 상속인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하더라도, 그와 같은 협의분할 행위는 신분법상의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무상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서 사해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울산지법 1998.5.20. 선고 97가합 7901 판결)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근저당권설정계약, 배당금원상회복)

1. 피고 ○○조합에 대하여

(주위적 청구취지)

(1) 피고 ○○조합(이하, 피고조합이라고만 한다)과 소외 유한회사 제일공업 사이에 별지 제(1), (2)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의 물건에 관하여 2014. 4. 13.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조합은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물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4. 4. 16. 접수 제21191호로써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1)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피고 ○○기금에 대하여

(1) 피고 ○○기금과 소외 유한회사 제일공업 사이에 위 부동산 및 물건에 관하여 2015. 5. 15.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 ○○기금은 위 부동산 및 물건에 관하여 위 법원 2015. 5. 16. 접수 제38337호로써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참조판례] ① 이미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의 여부
원고가 그 말소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변론종결 이전에 이미 말소되었다면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소송목적이 이미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를 소로써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으므로 이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다.

②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가운데 일부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사해행위가 되는지의 여부

채무자(법인)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으면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도 그의 유일한 재산을 여러 채권자 가운데 대표자를 같이 하는 특정채권자(법인)에게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③ 사해행위의 목적이 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에 터 잡아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경우에 위 배당금이 원상회복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목적이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터잡아 배당받은 금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원인없이 배당받은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원상회복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1987.8.25. 85가합513)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원상회복, 매매계약 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프랜트, 정○락, 정○동, 최○자는 연대하여 450,016,3980원 및 위 돈 중 82,452,193원에 대하여는 2015. 2. 8.부터 352,646,810원에 대하여는 2015. 2. 19.부터 각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한○수는 피고 주식회사 ○○프랜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178,397,356원 및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78,397,356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각 2015. 5. 10.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각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다. 피고 ○○환경관리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프랜트와 연대하여 위 가.항의 금액 중 158,000,000원 및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1.부터 52,8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1.부터, 85,2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6.부터 각 2015. 6. 10.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각 그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이○록과 피고 정○동 사이의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4. 6. 10.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이○록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등기소 2014. 7. 12. 접수 제4699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사해행위취소등 청구(신탁계약취소,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사이에 2008. 11. 20. 체결된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건설에게 ○○지방법원 2008. 12. 2. 접수 제907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 채권자취소등 청구(양도약정, 대물변제계약)

1. 피고 이○계, 임○효와 소외 ○○건설 주식회사 사이의 2011. 12. 2.자 별지 제 1, 2, 3, 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한 양도약정을 취소한다.
2. 소외 ○○건설 주식회사에게 피고 구○병, 이○갑, 양○오, 안○영은 별지 제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윤○재, 박○희, 김○희, 전○동은 별지 제3, 4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31.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 수익자가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가 문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긴다. 그리고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로써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 취소를 구하는 경우,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취소를 구하는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므로, 전득자의 악의 판단에서는 전득자가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만이 문제가 될 뿐이고, 수익자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법률행위의 사해성을 인식하였는지는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87672 판결)

[참조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의 의미 및 수익자의 선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수익자)

사해행위취소에 있어서 주관적 요건인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수익자가 선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다107198 판결)

❖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채권양도계약취소)

1. 피고와 소외 2 사이의 별지목록 채권에 관하여 2007. 9. 3.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수계인에게 313,164,204원 및 그 중 84,964,95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228,199,251원에 대하여는 당심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채권양도계약취소)

1. 피고와 주식회사 로비스코리아 사이에 주식회사 로비스코리아의 유니코로지스틱스 주식회사에 대한 거래대금채권에 관하여 2008. 4. 23.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64,992,4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992,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해행위 취소등 청구(채권양도계약취소, 주식매수대금)

1. 피고(반소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6. 15.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09. 10. 19.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09. 10. 19.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620,75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해행위취소 청구(양도계약취소)

피고 1과 주식회사 ○○디자인아트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1,367,514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2와 주식회사 ○○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25,068,489원의 한도 내에서, 피고 3과 주식회사 ○○디자인아트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8. 체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계약을 119,141,768원의 한도 내에서 각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1은 121,367,514원, 피고 2는 125,068,489원, 피고 3은 119,141,768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사해행위취소 청구(대물변제계약취소)

피고와 원고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5. 체결한 대물변제계약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를 채무자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카합2908호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신청에 관하여 가처분신청을 취하하는 의사표시를 하라.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 사해행위취소 청구(상속재산분할협의취소)

피고들과 소외 1이 2009. 12. 4.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이를 취소한다. 피고들은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망 소외 2의 공유지분 3/13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 성북등기소 접수 제 3011호로 경료한 각 3/52 지분에 관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사해행위취소 청구(대물변제계약취소)

피고 1, 2와 소외 1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각 2007. 4. 5.자 대물변제 계약을 각 취소하고, 피고 1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 4. 10. 접수 제1688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주위적 또는 예비적으로, 피고 2는 원고에게 5,6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9.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사해행위취소 청구(권리질권설정취소)

1.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태연에프앤씨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권리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소외 주식회사 태연에프앤씨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코엑스에게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태연에프앤씨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참조판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다만 사업의 계속 추진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존 채무를 아울러 피담보채무 범위에 포함시켰다

면, 그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2009.05.14. 선고 2008다70701 판결).

☐ 사해행위취소 청구(매매계약취소)

가. 피고 주식회사 ○○스틸(이하 '피고 ○○스틸'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1,517, 549, 200원 및 그중 1,056,242,304원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스틸,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931,371원 및 그중 229,608,358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5. 12. 11.까지 연 14.42%,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1) 의료법인 △△의료재단과 피고 ○○스틸 사이에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6.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회생회사 의료법인 △△의료재단의 관리인 피고 2의 소송수계인 관리인 소외인(이하 '피고 회생회사 △△의료재단의 관리인 소외인'이라 한다)은 피고 ○○스틸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라. 피고 4는 피고 ○○스틸에게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 4. 11. 접수 제334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마. 피고 5는 피고 ○○스틸에게

1) 별지1 부동산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 11. 21. 접수 제11571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별지1 부동산목록 제3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천안지원 2012. 11. 21. 접수 제1157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참조판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서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함과 아울러 전득자를 상대로도 전득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전득자의 악의는 전득행위 당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 즉 사해행위의 객관적 요건을 구비하였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한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 전득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